

경우 (“을”이 동가의 1순위가 된후 추첨을 통하여 최종낙찰이 확정된 경우, “을”보다 선순위의 입찰참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최종낙찰이 된 경우 포함) “을”은 “갑”에게 본 계약서에 정한 “낙찰보수료”를 지급한다. (단, 단가계약의 경우 총 공사 예정금액으로 낙찰보수료를 지급한다.)

2. “갑”이 “을”에게 공동도급을 제공하여 (구성업체,분담업체)낙찰된 경우 입찰에 참여한 비율에 따라 낙찰보수료를 지급한다. 또한 “갑”과 계약을 체결한 “을”이 자발적으로 도급을 맺어 가격제시를 받은 경우도 적용한다.

3. “을”이 “갑”이 제공한 제시가격을 열람하였다면, 제시가격을 기준으로 $\pm 0.03\%$ 절상,절하한 금액으로 “을”이 임의투찰 하거나 다른 금액으로 투찰 하였음에도 “갑”이 제시한 금액이 1순위라면 4조 1항을 적용한다.

4. “을”은 본 계약서에 정한 “낙찰보수료”를 “갑”의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체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낙찰보수 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을”은 성공 보수 금액중 50%의 지급유예를 신청할수 있으며 지급유예 최장기간은 50일 이내로 한다.

제 5조 (계약 연장)

계약 기간 종료 한달전 까지 “갑”과 “을” 일방의 요청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매년 12개월 단위로 연장된다.

제 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대전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을”은 본 계약서 계약내용을 숙지한후 동의하며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본 계약서 표지에 기명 날인 한 것으로 확인하고 인정한다.

대표이사 _____ (인)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로 157, 401호	(주)대성입찰	TEL:042-822-4431 FAX: 042-822-7438 // 0504-026-4431
결제계좌안내 : 국민 538201-04-283864 ※ 세금계산서는 입력해주신 e-메일 주소로 발송해드립니다.		

2017 년 월 일